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259
----------	-------

발의연월일 : 2026. 6. 15.

발 의 자 : 이훈기 · 최민희 · 장종태
김남근 · 박지원 · 김 윤
전진숙 · 양부남 · 황운하
김용만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규모 해킹과 정보통신망 침해사고가 잇따르면서 국민의 통신서비스 이용 안전과 디지털 신뢰가 크게 위협받고 있음. 침해사고는 단순한 시스템 장애나 일시적 서비스 중단에 그치지 않고, 이용자 정보 유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스미싱, 금전적 피해, 사생활 침해 등 후속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

특히 정보통신서비스는 국민 생활 전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한 번의 해킹 사고만으로도 다수 이용자에게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그럼에도 현행 제도상 침해사고 피해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손해배상 청구나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

최근 정보통신망 침해사고가 반복되고 피해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

망법’)에도 반복적 침해사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이 신설되는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되고 있음. 이는 해킹 사고와 침해사고를 단순한 기술적 사고가 아니라, 이용자 보호와 디지털 안전에 관한 중대한 법적 책임의 문제로 보겠다는 취지임.

그러나 침해사고에 대한 제재가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그칠 경우, 실제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 대한 상담, 법률지원, 분쟁조정, 소송지원, 2차 피해 예방 등 실질적인 피해회복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정보통신망법상 제재금이 단순한 국고 수입에 그치지 않고, 침해사고 피해 이용자의 권리구제와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와 관련하여 징수된 과징금·가산금·이행강제금·과태료 등을 재원으로 하는 정보통신망침해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침해사고 피해 이용자에 대한 상담, 법률지원, 분쟁조정 및 소송지원,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명의도용·보이스피싱·스미싱 등 후속 피해 예방, 피해 확산 방지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정보통신망법상 제재가 위반 사업자에 대한 사후 제재에 머무르지 않고, 침해사고 피해 이용자의 실질적 권리구제와 2차 피해 예방으로 이어지는 제도적 환류 구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 11 신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11(정보통신망침해피해자보호기금의 설치) ①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등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피해회복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침해피해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48조의8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및 가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48조의7에 따라 징수한 이행강제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3. 제76조에 따라 징수한 과태료 중 침해사고와 관련하여 징수한 과태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4.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5.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④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피해 이용자에 대한 상담 및 법률지원
2.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피해 이용자에 대한 분쟁조정 및 소송지원
3.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피해 이용자에 대한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4.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인한 2차 피해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지원
5.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와 관련된 후속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
6.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피해 사실 확인 및 피해구제 절차 지원
7. 정보보호 취약계층에 대한 침해사고 피해예방 교육·홍보 및 권리구제 지원
8. 침해사고 피해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지원
9. 그 밖에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피해 이용자의 권리구제와 피해회복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⑥ 기금의 관리·운영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11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징수하는 과징금·가산금·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48조의11(정보통신망침해피해자보호기금의 설치) ①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등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피해 회복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침해 피해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u></p> <p><u>② 기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u></p> <p><u>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제48조의8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및 가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u> <u>2. 제48조의7에 따라 징수한 이행강제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u> <u>3. 제76조에 따라 징수한 과태료 중 침해사고와 관련하여 징수한 과태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u> <u>4.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u>

출연금 또는 기부금

5.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수입금

④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
한다.

1.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피해
이용자에 대한 상담 및 법률
지원

2.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피해
이용자에 대한 분쟁조정 및
소송지원

3.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피해
이용자에 대한 피해구제 지원
금 지급

4.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인한
2차 피해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지원

5.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스미
싱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와
관련된 후속 피해 예방을 위
한 지원

6.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피해
사실 확인 및 피해구제 절차

지원

7. 정보보호 취약계층에 대한
침해사고 피해예방 교육·홍
보 및 권리구제 지원

8. 침해사고 피해 이용자 보호
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지원

9. 그 밖에 정보통신망 침해사
고 피해 이용자의 권리구제와
피해회복 지원을 위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
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에 위탁할 수 있다.

⑥ 기금의 관리·운용 및 제4
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